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991 제출연월일 : 2024. 7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6조(결격사유)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			
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.			
1. 미성년자 • 피성년후견인 또	1. 18세 미만인 사람, 피성년후		
는 피한정후견인	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		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		